

## NEWSLETTER

January 2021

자본시장 그룹

Capital Markets Group

## CONTACT



변호사 오현주

T: 02.772.4690

E: [hyunjoo.oh@leeko.com](mailto:hyunjoo.oh@leeko.com)

변호사 현승아

T: 02.772.4389

E: [seunga.hyun@leeko.com](mailto:seunga.hyun@leeko.com)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

지난 해 자본시장 규제 관련 법령에 대한 다수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금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중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한 시행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거쳤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2020년 통과된 자본시장 규제 관련 법령들의 하위법령의 제·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금년에도 자본시장 규제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

## 가. 정보교류 차단, 업무위탁, 경영·부수 업무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2021. 5. 20. 시행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 차단 의무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도입하고, 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 등 이해상충 발생여지가 있는 정보단위를 기준으로 정보교류 차단 조치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경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이용행위 시 정보이용자 이외에도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이익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추가된 점,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존 정보교류 차단 규제보다 강화된 수준인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위탁 규제에 있어서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고 동의없는 재위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 나.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의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년 1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모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모펀드의 피투자펀드 투자시 피투자펀드의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20% → 50%)하여 재간접펀드의 운용상 비효율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정펀드에 대한 자산총액

20% 투자제한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증권의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자를 기준으로 동일 유동화증권에 대한 펀드자산의 10% 투자 제한이 적용되므로, 개별 SPC를 기준으로 하였던 현행법상 기준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모펀드의 일반사무의 편의를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① 수시공시 관련 투자자 통지방법에 우편, 문자메시지를 추가하고, ② 공모펀드의 연기수익자총회(최초 수익자총회 이후 소집되는 수익자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③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 해지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완화하고, ④ 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의 결산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관·임직원 제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는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거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종래의 금전수탁 15% 제한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은 제한(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수 등)됩니다.

#### 다. 불법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 4. 6.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공매도와 관련하여 ① 주문금액 이내의 과징금 부과, ② 형사처벌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③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계약 내역의 5년간 보관, ④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시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 착오에 기인한 무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재 사안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징금 도입에 따라 업무상 착오 또는 과실에 기인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수탁받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무차입공매도 수탁이 문제되는 경우 경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증대되었습니다. 한편 대차계약 체결 내역의 구체적인 보관방식, 공매도 시에도 증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신용공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 6. 30.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래 일반 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이 고비용으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마. 사모펀드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년 7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모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자사 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토록 규정하여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하여 펀드자산을 운용한 경우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추가하였는데, 관련 업계는 투자설명자료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설명자료의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타사펀드 활용 포함), 펀드자금 투자나 대출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1인펀드 규제 회피를 위한 자사펀드의 참여(타사펀드 활용 포함)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사모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 추세에 맞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2.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② 의사결정자의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며, ③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을 전면 도입하고, ④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판매수입의 5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판매금지명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안에서는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행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제정안(감독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규제의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일반 개인차주에 대한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여(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용자, 증권대여 등 제외) 규제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② 시행령안에서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정한 데 이어 감독규정에서는 명령 전 고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명령내용의 공시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감독규정은 시행령안에서 규정된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추가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발동요건 중 ‘현저한 손실’, ‘심각한 손실’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문언의 의미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발효 이전 의견제출 시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링크\]](#)

##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은 과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을 입법화한 것이나, 대표회사의 의무 및 제재조치 등과 관련하여 위 모범규준과 달라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 기준은 여수산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수범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및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작년 입법예고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서 변경된 점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선정과 유사합니다.

대표금융회사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중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는 금융그룹감독법에서 신규 도입된 것으로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시정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모범규준과 달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범 대상인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위험전이 관리)와 관련한 의무 이행에 과실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이와 같이 올해는 자본시장 규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변화한 규제 준수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직 하위법령 제·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법령에 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화하는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우 04532) | Tel: 02-772-4000 | Fax: 02-772-4001/2 | [www.leeko.com](http://www.leeko.com)

뉴스레터 더 보기

COVID-19 자료실